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「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」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. 8. 11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 □ 지원대상 : '23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~39세 청년가구
 □ 지원규모 : 4,000명 ※ 상반기 6,000명 포함 총 10,000여 명 지원
 □ 지원금액 :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
 □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

※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

□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

ㅇ 신청기간 : 2025. 8. 12.(화) 10:00 ~ 8. 25.(월) 18:00(마감)

ㅇ 선정방법 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
ㅇ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
2. 지원요건

□ **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** ※ 신청시 기준

- o (주소) '23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('25.8.25.)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
 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·자매 등) 있어도 신청 가능
 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,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
- ㅇ (연령) 만 19~39세로 1985.1.1.~2006.12.31. 출생 청년
- ㅇ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5년 7월분)이 '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
 -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
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
 - ※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<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>

(단위: 원)

기준	건강보험료	월소득기준	건강보험료	본인부담금 ¹⁾
중위소득	가구원수	걸ㅗ국기군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
	1인	3,589,000	127,230	58,386
	2인	5,899,000	210,208	143,648
	3인	7,539,000	271,459	221,206
	4인	9,147,000	330,765	292,298
150%	5인	10,663,000	386,684	357,963
130%	6인	12,098,000	431,294	411,250
	7인	13,483,000	506,004	496,008
	8인	14,869,000	552,230	545,970
	9인	16,254,000	599,810	591,277
	10인	17,639,000	673,463	654,281

¹⁾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
- ㅇ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 - ※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, 공유지분 포함
 - ※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"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"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 시 선정 불가 (단.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주택²⁾을 경·공매로 낙찰한 경우 등은 예외)
- o (주택)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·월세 거주 ※ 공인중개시법 시행규칙 참고
 - 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
참여 제한 대상

▶ '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(중앙부처, 자치구 등)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

< 중복수혜 불가 사업 >

- (국토교통부)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- (市 자치구)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- (LH, SH) LH 전세임대주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 - ※ 단,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(반대도 동일)

(예시)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→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

- ▶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▶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- ▶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지원내용

- □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 - o '23.1.1.이후부터 신청 마감일('25.8.25.)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
 - (중개보수)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
 - ※ 재계약. 중도 퇴실로 인하여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지원 불가
 - (이 사 비) 개인용달, (반)포장이사, 사다리차 이용비 등
 - ※ 택배비. 청소비. 대중교통비. 택시비.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(렌터카) 등 제외

²⁾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,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(수도권은 3억 원) 이하

4. 지원대상 선정 기준

ㅇ 선정인원 : 하반기 모집인원 4,000명

ㅇ 선정방법 : 심사결과 '적격자'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

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
▶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
- (사회적 약자)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이동)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가족돌봄청년, 청소년부모, 전세사기피해자(등), 국가보훈대상자³⁾

- (주거취약청년) (반)지하·옥탑방·고시원 거주 청년

<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>

구분	정의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「아동복지법」및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만 39세 이하인 자
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 ※ 단, 청소년 한부모가족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)은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다문화가정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국가보 훈관 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	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라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(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)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

³⁾ 국가유공자 유가족, 독립유공자 유가족,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 유가족,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,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

구분	정의
가족돌봄청년	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'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4)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
청소년부모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
전세사기피해자(등)	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o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 ※ 방문·우편 접수 등 불가

□ 제출서류

- ※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- ※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
- ※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

구분	제출서류	설명	
当 수	주민등록등본	-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	
	가족관계증명서	- (일반) 가족관계증명서 제출	
	임대차계약서 사본	-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·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,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※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사가 없는 경우 이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	
		① 입실확인서 - 임대인·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,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-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(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)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	

^{4) 1.}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)

구분	제출서류	설명
필수	지출 증빙서류	- ① 영수증인 경우: 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※ 중개보수,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- ② 계좌이체 경우: 계좌이체내역과 [공인중개업체, 이사업체]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※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[공인중개업체·이사업체]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※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
	통장사본	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※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※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구분	우선 선발 대상자	제출서류	
선 택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-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※ 서식은 공고문 붙임(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) 참고	
	가족돌봄청년	-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정보 및 돌봄대상자 증빙서류 등록 ※ 서울복지포털 기족돌봄청년 등록방법(http://pf.kakao.com/_JWWWG/108334810) ※ 돌봄대상자 증빙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※ 단, 기존 등록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 재등록 요구할 수 있음	
	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
	다문화가정	- 주민등록등본(상세) ※ 단, 주민등록등본(상세)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<u>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</u> 추가 제출 필요	
	전세사기피해자(등)	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	
	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	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5.18민주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
		-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	
		-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확인서	

6. 선정결과 알림

- □ 일시 ※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ㅇ 서류심사 결과 : 2025년 10월 중 (예정)
 -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·보완자료 제출 가능
 - ㅇ 최종심사 결과 : 2025년 11월 중 (예정)
 - ㅇ 지원금 지급 : 2025년 12월 초 (예정)

□ 방법

- ㅇ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공지사항 안내. 문자 발송
 - ※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청시 입력한 연락처로 발표 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나, 전화번호 변경 등 미수신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확인

7. 이의신청

- o 서류심사 결과 결정·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'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'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·보완자료 등록
- 이의신청 및 소명·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'서류심사 결과'를 결정·통보(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)한 날부터 10일 이내
 - 제출한 소명·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
- o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·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

8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·접수·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,
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
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
 - ※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발표 일정 등 문자 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
- ㅇ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ㅇ 우선 선발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현재 기준(신청시)을 적용함
-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, 착오 및 부정하게
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를 지원받은
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

※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☎ 1877-9358